

#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전망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 여는 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위원회는 약 2년 동안 인권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지 않게 부딪혔고 때로는 갈등이 있었으며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위

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왜냐하면 각 국가기관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 위원회의 감시의 대상이고 위원회는 인권의 잣대로 사회의 각종 인권현안에 독립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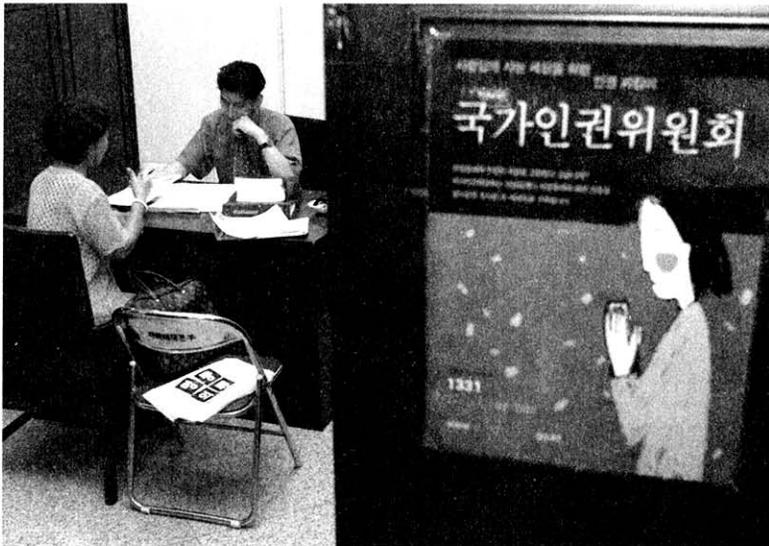
그러나, 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얻어왔다. 이것은 인권위가 잘 성장

해 갈 수 있도록 복돋워주고 인내해준 국민의 역량의 결과이자 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보편적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충실히 노력해 온 결과일 것이다.

## 활동내용

위원회는 과거부터 고착화된 정책, 법령, 제도 및 관행의 반인권적 요소가 인권침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왔다는 점을 중시하고, 인권침해의 근원적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라크전 반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등의 의견표명, 과거청산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권고를 비롯하여 구금시설 내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제출과 형형법 등의 개선권고,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체벌금지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의견표명, 호주제에 대한 의견표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개선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노력, 평등권과 관련한 권고, 긴급체포 남용을 방



지하고 수사절차상 적법절차 확립과 실현을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43건의 권고(2001. 11.~2003. 8.)를 한 바 있다.

개별 진정사건 구제와 관련해서도 100건 이상(2001. 11.~2003. 8.)의 고발 및 수사의뢰, 징계나 인권교육 수강 권고, 합의권고 등을 한 바 있다. 대부분 외국인노동자 관련 긴급구제조치와 권고, 유치장 및 구금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 적법절차 위반, 가혹행위 등 경찰수사과정과 관련한 권고와 같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권고와 장애, 성,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평등권 침해에 대한 권고 등이다.

또한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 등 사회적 취약부문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인권정책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인권상황 개선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경찰, 검찰, 교도관과 피진정인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의 전문가들로 인권교육 강사진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 및 배포·활용하고 있다. 영화, 만화, 동화,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인권을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한 것도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이다.

위원회는 올해 국가보안법,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세 개의 테스크포스트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연구팀을 운영하였다. 현재 각 주제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정책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평가와 과제

위원회가 각 국가기관에 대하여 진취적 관점에서 다양한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대상 기관에서 권고수용을 지연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므로써 권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에는 권고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명시적 규정

이 없어 위원회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마땅히 규제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인권정책협의회 신설 등을 통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개별적 진정사건의 처리와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지연되는 등 시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정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 표준절차 및 판단 지침 수립, 조사관 전문성 훈련 등의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지방사무소 개설이나 인력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주요현안에 대해서 인적자원의 신속적인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요한 사안일수록 권고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설득하는 사회적 합의과정 또한 중시해야 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위원회는 자유권의 향상과 함께 사회권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인권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 사안별로 유관단체와의 협력관계 증진, 위원회의 열린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행정, 입법, 사법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관으로서 소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조직, 인사업무는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 위원회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위원회의 과제들이다.

## 맺음말

국가보안법, 보호감호제, 빈곤문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권의 문제 등 올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위원회는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내년에도 차분하고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내년은 올해 보다 좀 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